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의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1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8. 31.

발 의 자 : 김의겸 · 김두관 · 유정주
김종민 · 김용민 · 양기대
최강욱 · 정태호 · 기동민
박범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, 조기퇴직 인원 증가, 업무의 연속성 저해,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,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(안 제8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고,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은”을 “정년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전보”를 “전보, 적격심사”로 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수사처검사 적격심사)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수사처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수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.

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처 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수사처검사) ①·② (생략)	제8조(수사처검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정년은 63세로 한다.	③ -----정년은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인사위원회) 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, 전보,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.	제9조(인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전보, 적격심사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수사처검사 적격심사)</u>
	①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.
	② 인사위원회는 수사처검사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수사처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

수사처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.

③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
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처
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
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
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퇴직
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
대통령에게 그 수사처검사에
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.